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66호 2018. 12. 14. (금)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675호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5
- 정선군 조례 제2676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20
- 정선군 조례 제2677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26
- 정선군 조례 제2678호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정선군 조례 제2679호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정선군 조례 제2680호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44
- 정선군 조례 제2681호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50
- 정선군 조례 제2682호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53
- 정선군 조례 제2683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57

- 정선군 조례 제2684호 정선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60
- 정선군 조례 제2685호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73
- 정선군 조례 제2686호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79
- 정선군 조례 제2687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98
- 정선군 조례 제2688호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101
- 정선군 조례 제2689호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104
- 정선군 조례 제2690호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109
- 정선군 조례 제2691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113
- 정선군 조례 제2692호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116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08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12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75호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정선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사무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의 예산 및 업무인력 등 사무운영 지원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76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정선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사항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신청이나 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등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시스템 민원처리 등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취소하거나 변경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할 경우와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8.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읍·면대장 및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분을 포함한다)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금 액	비고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1건	3,000원	
○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	1건	2,000원	
○ 낚시터업 허가·등록 지위승계 신고	1건	3,000원	
○ 관상어 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	1건	100,000원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40,000원	
○ 안마시술소 개설변경 신고 (단,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	1건	20,000원	

[별표2] <개정 2016. 12. 30.>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종 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8.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1건당 30,000원

다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 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 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 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 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 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 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 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	1건당 800원

본·초본 발급 수수료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 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 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 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 (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범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삭제 <2016. 12. 30.>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1건당 40,000원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	1건당 25,000원

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 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 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 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 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 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 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 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 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 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	1건당 10,000원

큰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제안이유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범위 확대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의 일치 및 상위법 위임 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한 수수료를 신설코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변경(안 제4조 제1항)

- 본적, 주소 또는 거소 →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

나. 수수료의 징수방법 다양화 (안 제5조)

- 현금징수 →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내용 반영(안 제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라. 감면 대상 추가(안 제7조제1항 제3호, 제8호, 제9호, 제10호)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마. 별표 1,3,5 각각 삭제하고, 별표 1, 2 신설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77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유사”를 “비슷”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한다.

제16조제3항과 제4항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 신설 2017.09.29.]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021년 12월 31일-----.

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④ (현행과 같음)

⑤

비슷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1.-----
2.----- 2021년 12월 3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1일까지-----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 ----- ----- ----- 2021년 12월 31일-----.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
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
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 략)

제16조(감면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
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
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
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
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
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
법」에 따른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감면신청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않는 -----

-----.

④ -----
----- 않는 -----

-----.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
----- 않은 -----

-----.

제안이유

2018년 12월 31일말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조문에 대한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하여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

- 감면 적용시한 3년 연장(일몰기한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시각장애4급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연장 (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연장 (안 제3조)
 -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9조)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78호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이라 한다)”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이 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이라 한다)”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의 따른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징수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출납원·지출원은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기금담당관”을 “징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 하여야”를 “발급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무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 급여비를 청

구한 때에는 그 진료시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

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 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금출납원” 을 “출납원” 으로, “발하여야” 를 “보내야” 로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 따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별지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이라 한다)</u>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u>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 ----- <u>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u> ----- -----. 제2조(세입과 세출) <u>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이라 한다)</u>- ----- <u>그 밖의</u> ----- ----- -----. 제3조(<u>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u>) 「지방회계법」 제46조의 따른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징수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출납원·지출원은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시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 의료급여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거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

제5조(수입) ①징수관-----

-----.

②-----
별지 서식-----

-----.

③-----
----- 발급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
-----.

제6조(지출) ①재무관-----

----- 대지급금을 구분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
----- 출납원----- 서류
를 보내야 -----.

②-----
----- 출납원-----

보내야 ----.

<삭 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 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 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납입기한까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전적가액이 체납처분 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손 처분하기로 의결한 경우

<신 설>

제8조 (생 략)

<삭 제>

<삭 제>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에 명시된 조문 삭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개정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 「지방회계법」 제46조, 대불금 ⇒ 대지급금

나. 상위 법령이 제·개정 시행으로 명문화되어 조례에 존치 불필요 조문 삭제

-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7조의2

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 (안 제8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반영

-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2항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회동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79호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
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휴대한”을 “지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초래한”을
“가져온”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초래한다고”를 “가져온다고”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연장할”을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
할”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한다.

별표 1, 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원)

시설명	비 수 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데 크	20,000	30,000	30,000	

1. 시설사용 기준(1일)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기간 적용

- 성수기 : 매년 7. 1 ~ 8. 31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비수기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 비수기 주말 : 금요일, 토요일
- 공휴일 : 공휴일 당일 및 공휴일 전일 포함

3. 캠핑장 내 전기사용

-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은 사용금지

[별표 3]

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3]

사용자 준수사항(제11조제1항 관련)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의 편안한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동물

애완동물 등 모든 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애완동물 동반사항 적발시 강제 퇴영 및 회원자격 직권탈퇴 조치됩니다.

4. 장소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수 있으며, 사용자는 배정된 곳을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5. 인터넷 예약

입장시 반드시 예약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신 후 체크인 가능하며, 동일인이 아니거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입장할 수 없습니다. 타인 양도, 양수, 교환, 매매행위가 적발 될 경우 환불기준 적용 후 취소처리 되며, 추후 캠핑장 예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밭에 차량진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출입은 23:00부터 07:00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7. 위생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버리셔야 합니다.

8. 소음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로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숙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 농사철 주변 농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소음기를 설치 사용(야간) 하고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화재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숯 또는 재 등은 별도 마련된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캠핑장 내에서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캠핑장 내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11. 홍보

캠핑장 내에서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캠핑장내 불법 상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12. 긴급사태

위급을 요하는 경우 호우·강풍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 및 캠핑장 내 통제가 필요한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관리·운영) ①·② (생략) ③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u>휴대</u> 한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u>초래</u> 한 경우 6. · 7. (생략)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u>초래한다고</u>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지닌</u> ----- 5. ----- ----- ----- <u>가</u> <u>져온</u> ----- 6. · 7. (현행과 같음) 8. ----- ----- <u>가져온다고</u> ----- -

제14조(위탁계약 등) ① (생 략)

② 캠핑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생 략)

② 수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14조(위탁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 할 --.

제15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개수·보수 -----

--.

제안이유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행정재산의 갱신방법과 절차 등을 개정하고
- 나.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야영장 등 유사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규정 정비(안 제14조제2항)
- 캠핑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캠핑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 나. 시설사용료 및 사용자 준수사항 개정(별표 1, 별표 3)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80호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별표1” 과” 를 “ “별표1” 과 “별표2” 와” 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사람” 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전단 중 “「공직자선거법」 제6조제2항” 을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사람” 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암동굴 관람료 및 모노레일·카트 사용료

[별표 1]

화암동굴 관람료 및 모노레일·카트 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원)

구 분		화 암 동 굴			모 노 레 일			카 트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1인승	2인승
일 반	개인	5,000	3,500	2,000	3,000	2,000	1,500	12,000	17,000
	단체	4,500	3,000	1,500					
·폐광지역 주민 ·명예군인 ·자매결연도시민 ·정선군 숙박 관광객	개인	3,500	2,500	1,500					
	단체	3,000	2,000	1,000					
투표자	개인	3,000	2,000	<삭제>					
	단체	2,500	1,500	<삭제>					

[별표 2]

야영장 시설사용료

[별표 2]

야영장 시설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비 수 기		성수기	비고
		주중	주말 · 공휴일		
노 지		20,000	20,000	20,000	
데 크		20,000	30,000	30,000	
캐라반	3인용	60,000	70,000	100,000	
	4인용	70,000	80,000	120,000	
	6인용	80,000	100,000	150,000	

1. 시설사용 기준(1일)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기간 적용

- 성수기 : 매년 7월~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비수기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 비수기 주말 : 금요일, 토요일
- 공휴일 : 공휴일 당일 및 공휴일 전일 포함

3. 캠핑장 내 전기사용

-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 <u>별표1</u> "과 같다.	제3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 " <u>별표1</u> "과 " <u>별표2</u> "와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료 면제) ----- <u>사람</u>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감면) ① (생략)	제7조의2(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해당하는 폐광지역 주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투표자: 「공직자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자로서 유효기간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08. 11. 1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0.05.>	4. ----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삭제 2. ~ 4. (생략) 제11조(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요금을 면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제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의 제한) ----- <u>사람</u>----- -----. 2. ~ 4. (현행과 같음) <삭제>
--	--

제안이유

- 가.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야영장 사용료 등이 상이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이를 개정, 일원화하고
- 나.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및 부적합한 상위법령 제명,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명, 조항 정비(안 제7조)
- 「공직자선거법」 제6조제2항 ⇒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 나.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징수기준 삭제(안 제11조)
- 다. 시설사용료 분리
- 화암동굴 · 모노레일 · 카트(별표 1) / 야영장(별표 2)
- 라. 화암관광지 야영장 사용료 조정(별표 2)
- 노지 사용료 : 10,000원 → 20,000원(비수기, 성수기 미 구분)
 - 데크 사용료 : 20,000원 → (비수기 주중) 20,000원
(비수기 주말, 공휴일, 성수기) 30,000원
 - 캠핑캐라반 비수기 주말 · 공휴일 요금 조정
 - 3인용 : 100,000원 → 70,000원
 - 4인용 : 120,000원 → 80,000원
 - 6인용 : 150,000원 → 100,000원

2016년에 상향 조정되어 2년간 운영결과, 비수기 주말·공휴일 요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고 실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캠핑 캐라반 이용요금 인하 조정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81호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한”을 “설치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저해하는”을 “방해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이용료 요금표

[별표 2]

시설이용료(제9조 관련)

(단위:원)

시설명		비 수 기		성수기	비고
		주중	주말 공휴일		
산막	26㎡ (8평형)	40,000	60,000	60,000	
	56㎡ (17평형)	80,000	120,000	120,000	
	79㎡ (24평형)	100,000	170,000	170,000	
	195㎡ (59평형)	250,000	350,000	350,000	
데크		20,000	30,000	30,000	

1. 시설사용 기준(1일)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기간 적용

- 성수기 : 매년 7월~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비수기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 비수기 주말 : 금요일, 토요일
- 공휴일 : 공휴일 당일 및 공휴일 전일 포함

3. 캠핑장 내 전기사용

-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 인 되어 조성한 휴양단지의 운영관 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서 시설물 관리 및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 ----- 이바 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휴양단지"라 함은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된 광 원휴식공간중 관리할 필요 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1.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2. "청소비"라 함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 리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 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 ----- ----- 설치한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입장"이라 함은 휴양단지 구역안 에 들어감을 말한다.	4. ----- 구역 안---- -----.
제4조(관리) ① ~ ⑤ (생략)	제4조(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위탁재산(부지 및 시설을 말한	⑥-----

다)의 사용 및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허가취소)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그 밖에 휴양단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11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산막이용료를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휴양단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3. · 4. (생략)
- ② (생략)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 5. (생략)

제13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환

-----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

제6조(허가취소) -----

-----.

1. ~ 5. (현행과 같음)
6. ----- 방해하는 -----

제11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감면) ①----- 사람-----

-----.

1. (현행과 같음)
2. ----- 구역 안-----
3.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

-----.

1. 감염병 -----
2.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환

불) 이미 납부된 청소비 및 시설이
 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
 만, 제12조에 따른 입장거절 및 퇴
 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불) -----
 ----- . -----
 ----- 경
우는 -----.

제안이유

- 가.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야영장 테크 시설이용료 등이 상이하여 이를 현실에 부합되게 일원화하고
- 나. 부적합한 상위법령의 제명,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도사곡휴양림 야영장 테크 시설이용료 개정 등(별표 2)
- 비수기 주중 : 10,000원 → 20,000원
 - 비수기 주말, 공휴일, 성수기 : 10,000원 → 30,000원
- 나. 상위법령의 제명, 조문, 용어 적용 오류를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82호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5명” 을 “3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사람” 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연되는” 을 “늦어지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 ① ----- ----- <u>30명</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u>사람</u>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성실히행의무) ①·② (생략)	제14조(성실히행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u>지연되는</u>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 ----- <u>늦어지는</u> ----- ----- -----.
④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u>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u>	<삭제>

제안이유

- 가.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 나. 상위법령 상 근거가 없는 협의회의 의결사항 이행여부 점검 결과 공표 조항 삭제

주요내용

- 가.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상위법령 맞게 개정(안 제5조제1항)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나. 협의회의 의결사항 이행여부 점검결과 공표 조항 삭제(제14조4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 법률용어 등 정비(안 제5조, 제14조)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83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법인격)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이 조례에서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및 업무) ① 재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 제1항 각 호의 상권활성화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업무를 포함한다.

1.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승인하여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재단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강원도 또는 군의 대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강원도의 대행 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경비의 범위·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원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자발적 출연금
 3. 해당 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되, 재단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부담경비를 재원으로 수행해야 한다.
- ③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보조금
 2.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자발적 기탁출연금
 3. 각종 사업의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④ 군수는 제3항제1호의 보조금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교부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족한 경비에 한정한다.

제6조(상권협의회) ① 재단에는 상권의 효율적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선군 상권활성화 재단 상권협의회(이하 "상권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상권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추진 대상 및 범위
 2. 지원 대상 및 규모
 3. 전반적 자문 및 제안
 4. 지역주민, 상인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
 5. 그 밖에 재단 또는 상권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상권협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는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검사 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해당 검사공무원의 직급·성명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재단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기능 증진
3.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환경 조성
4. 문화관광상품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1조(존속기한) 재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및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출연금의 일부 및 사무로 본다.

제안이유

침체된 상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상권 기능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 및 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 공동마케팅,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
- 그 밖에 군수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승인하여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라. 상권활성화재단의 재원의 조성(안 제5조)

마. 상권협의회 설치 및 협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상권활성화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사.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84호

정선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농공단지”를 “정선군 농공단지”로 한다.

제4조 중 “사업기간중”을 “사업기간 중”으로, “때에 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5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u>정선군농공단지</u>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u>사업기간중</u> 세입결합의 발생으로 세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u>때에</u> 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u>아니</u>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u><신 설></u>	<u>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 ----- <u>정선군 농공단지</u> ----- ----- -----. 제4조(예산운영) ----- <u>사업기간 중</u> ----- ----- <u>때는</u> ----- -----. 제5조(준용) ----- <u>않은</u> -----. 제7조(준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u>준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u> 한다.

제안이유

2014. 5. 28.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조례 명칭의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띄어쓰기 적용

- 「정선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나. 존속기한 신설 (안 제7조)

-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4조, 제5조)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85호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으로, “밖에” 를 “밖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 (이하” 위험도평가 “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를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를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 로, “요청에 의해” 를 “요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을 “다음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앙본부장” 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피해지역내” 를 “피해지역 내”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호” 를 “제2호” 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을 “다음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 을 “행정안전부”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등급” 을 “다

음 각 호에 따라 3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 서식]
2. 주의 [별지 제4호 서식]
3. 안전 [별지 제5호 서식]

제7조제5항 중 “시설물의 사용”을 “시설물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여 사용”으로, “있다[별지 6호 서식]”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도”를 “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현장조사”를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지사 및 본부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같은 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별지 1호서식(종전의 별지서식)부터 별지 6호서식(종전의 별지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지 제3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별지 제4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주 의!

본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별지 제5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안 전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별지 제6호 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u>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u>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u>밖에</u>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 ----- ----- ----- <u>밖의</u> ----- -----.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 (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정선군 관할 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1. · 2. (생 략)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 ④ (생 략)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생 략)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
----- 요청으로 -----
-----.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 다음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피

평가단장은 피해지역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본부장은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3호 서식]

2. 주의 [별지 4호 서식]

3. 안전 [별지 5호 서식]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

해지역 내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제2호 -----
-----.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
----- 다음 각 호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행정안전부 -----
-----.

④ -----
----- 다음
각 호에 따라 3등급 -----
-----.

1. 위험 [별지 제3호 서식]

2. 주의 [별지 제4호 서식]

3. 안전 [별지 제5호 서식]

⑤ -----
----- 시설물
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여

할 수 있다[별지 6호 서식].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강원도지사 및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강원도지사 및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사용 -- 있다.

⑥ -----
----- 따-----
--.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

- 본부장-----

-----.

② 본부장-----

----- 없으면 -----
-----.

제안이유

상위법령 명칭 변경 및 용어, 문장 및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명 개정에 따른 개정(안 별지 제1호 ~ 제6호서식)

-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나. 중앙행정기관명 등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7조제3항)

- 소방방재청 ⇨ 행정안전부

다. 용어, 문장 및 띄어쓰기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86호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태 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법 제20조제1항제1호	12만원 17만원 25만원 35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 2.4㎡ 이상 2.6㎡ 이하	58만원
- 2.7㎡ 이상 3.0㎡ 미만	75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 하는 면적의 0.5㎡당 8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8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17만원
- 3.8㎡ 이상 4.4㎡ 이하	22만원
- 4.5㎡ 이상 5.0㎡ 미만	25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35만원
- 6.1㎡ 이상 8.0㎡ 이하	50만원
- 8.1㎡ 이상 10.0㎡ 미만	58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 하는 면적의 1㎡당15만원 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 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2천원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삭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 반영으로 주민불편을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별표 6 제3호)

- 상위법령에서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비치 및 등록번호 등 표시 의무가 삭제 되었으므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87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2호 중 “(그 이상인 토지와 경사도 25도를 초과하는” 을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으로, “토지이용복구계획 상의 주 종단” 을 “토지이용복구계획의” 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 중 “산지 등에서 벌목 후 토지이용에 따른” 을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이용
의”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을 “제4항까지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결정 고시된” 을 “결정 또는 지정 고시된” 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4조 제목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을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
한)”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변경관지구” 를 “특화경관지구” 로
하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5호를 각각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
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제

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3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5호 · 제6호 ·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제2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영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제50조제9호(중전의 제3호) 중 “처리시설”을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5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별표 5 제10호다목 및 라목, 제1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으로 한다.

별표 17 제8호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으로 한다.

별표 20 제9호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개정 2016.6.9., 2016.10.20.>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3호 관련)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너비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 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차목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7] <개정 2016.6.9.>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5호 관련)

(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개정 2016.6.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8호 관련)

(영 별표 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회와 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 ----- ----- 다만 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12. (생략) <신설>	1.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그 이상인 토지와 경사도 25도를 초과하는 일단의 사면길이가 40미터 이상 되는 구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 또는 토지이용복구계획 상	2.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 ----- ----- ----- ----- ----- 토지이용복구계획의 -----

의 주 중단 경사도에 따른다.
3.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산지 등에서 벌목 후 토지이용에 따른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수유출량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시설)은 제1항부터 제4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 4. (생 략)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생 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이용의

-.

⑤ -----

--- 제4항까지를 -----

-----.

1. -----

----- 결정 또는

지정 고시된 -----

2. ~ 4. (현행과 같음)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생 략)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5. (생 략)

③ (생 략)

제34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
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
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5. (생 략)

<신 설>

6. ~ 14. (생 략)

15. (생 략)

<신 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
 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
 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 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
도제한) ----- 특화
경관지구 -----
 -----.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 15. (현행 제6호부터 제14
 호까지와 같음)

17. (현행 제15호와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생 략) <u><신 설></u> 3. ~ 8. (생 략) 9.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의 위락시설 5. ~ 10. (현행 제3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12. (현행 제9호와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의 교정 및 군사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 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접하여 경관지구로 지정 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 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 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지정 목 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	---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층수의 1.5배(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생 략)

2. 수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 건축물의 제한)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

-----.

1. (현행과 같음)

2. 특화경관지구: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에 따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②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다. (생략)

2. (생략)

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

1. ~ 15. (현행과 같음)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물환경보전법」-----

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른 특정
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
시술소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
신병원 및 요양소

5. · 6.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9. -----
----- 처리시설. 다만, 주유
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신 설>

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신 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신 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신 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신 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2조(건폐율 강화 및 완화) ① ~ ⑤ (생 략)

⑥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

제52조(건폐율 강화 및 완화)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2020년 12월
31일-----

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 2.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조례명칭 개정과 규제개선 과제 정비 및 개발행위 기준에 대한 일부 모호한 조문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중 공동위원회 심의대상 명시(안 제9조제13호)

-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일부 모호한 조문 등의 정비로 허가기준 명확화 (안 제21조, 제28조)

- 평균경사도 20도 미만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위원회 자문대상 명확화 (안 제21조제1항제2호)
- 산지 외 지역에서도 친환경적인 복구계획 수립(안 제21조제4항)
-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도로기준 명확(안 제21조제5항제1호)
- 경사도 20도 이상 토지의 위원회 자문 대상에서 제외(안 제28조제2항제4호)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및 제한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상의격리병원, 교정 및 군사시설을 각각 포함(안 제34조)
- 통합되는 미관지구의 제한사항을 시가지경관지구에 반영(안 제35조)
-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명칭 개정(안 제38조)
-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 제한사항 삭제 (안 제41조~45조)
-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삭제(안 제47조)
-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로의 명칭 변경(안 제48조)
-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규제사항을 특정용도제한지구에 동일하게 적용 (안 제50조)
- 기존 공장의 증축 허가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2020.12.31.일 까지) (안 제52조제6항)

라.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으로 변경(안 제49조제2항 제1호, 별표5, 별표17, 별표20)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88호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도시계획담당부서”를 “도시개발담당부서”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중 “경우”를 “때”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생략)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u>도시계획담당부서</u> 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도시개발담당부서</u> ----- -----.
제6조 (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생략) ② 매수 결정한 토지는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 <u>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u> 」을 준용한다.	제6조 (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u> 」 -----.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u>경우</u>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u><신 설></u>	제7조 (준용) ----- ----- <u>때</u> -----. <u>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제안이유

가.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존속기한 (2018. 12. 31.)이 만료함에 따라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선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운용 총괄관리부서를 변경 (안 제2조제2항)

나. 존속기한 신설 (안 제9조)

1) 조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명시함

다.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안 제6조, 제7조)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89호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를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u>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u>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u>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u> 제1조(목적) ----- ----- ----- ----- <u>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u>----- -----. <u>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띄어쓰기 적용

-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조례 존속기한 신설 (안 제7조)

-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함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90호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차요금”을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도비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중 “상당”을 “타당”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u>		<u>정선군</u>	<u>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u>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u>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따</u> <u>른</u> ----- ----- ----- -----.			
제2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u>각호</u> 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u>주차요금</u> 2. 법 제8조제1항관련 <u>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u> 3. 법 제19조제5항관련 <u>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u>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u>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u> 5.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u>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u> 6. <u>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액</u>	제2조(세입) ①----- --- <u>각 호</u> -----. 1. ----- ----- <u>주차요금 등의 수입금</u> <u>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u> 2. <u>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u> 3. <u>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u> 4. <u>국·도비 보조금</u>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u>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u>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u>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u>			

7. 강원도건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징수한 견인료

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관련 과징금

9. 국·도비 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수
입

② (생략)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충당한다.

1. ~ 4. (생략)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제7조 (생략)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의 징수금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세출)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예비비) -----

----- 타당-----
-----.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
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
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에 따라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 까지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띄어쓰기 적용

- 「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상위법령의 근거규정과 동일하게 특별회계의 세입규정 개정(안 제2조)

다. 존속기한 신설 (안 제7조)

-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91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6조”를 “「지역보건법」 제3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8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29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신용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별표 제2호제1호 중 “법 제18조”를 “법 제23조”로 하고, 근 거 법령란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제2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29조”로 하고, 근 거 법령란 중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 별로 동일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근 거 법 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 ----- -----.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 ----- -----.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 ----- 제23조----- -----
2.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법 제29조 ----- -----
제3조(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 -----.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신용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올바른 기재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보건법」 개정(2017.9.19.)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 수정(안 제4조, 제6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삭제
- 지방세 징수의 예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변경

나. 상위 법령의 개정된 법 조항의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

- 「지역보건법」 제18조 → 제23조 개정
- 「지역보건법」 제21조 → 제29조 개정
- 「지역보건법」 제26조 → 제34조 개정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04.)에서 의결된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92호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0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u>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u>아니한</u> 사항은 정선군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u><신 설></u>	<u>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 10조(준용) ----- <u>않은</u> -----. <u>제12조(준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준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제안이유

2014. 5. 28.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령, 조례 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조례명 띄어쓰기 정비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조례 존속기한 신설 (안 제12조)

-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

규 칙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08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 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제목 “(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9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특정한”을 “특별히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기관중”을 “금융기관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성립된다”를 “이루어 진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잔여기간(잔여기간)”을 “남은 기간(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9인 이상 12인 이내”를 “9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부하거나”를 “발급하거나”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법 제34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통지전에”을 “통지 전에”으로, “청취하여야”를 “들어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초래하는”을 “가져오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정선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 ----- ----- ----- 필요-----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금고”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1. ----- 「지방회계법」 제38조----- ----- ----- ----- ----- -----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

2. “일반회계”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2.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3. -----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회계처리-----
-----.

4. -----
----- 특별히 정한-----

-----.

5. ----- 금융기관 중 --

-----.

6. -----

----- 이루어 진다.

제3조(적용 범위) ----- 적용범위-----.

1. (생 략)

2.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안 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로 한다)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4. · 5. 삭 제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안 니한다.

제5조(금고 지정기준) ① (생

1. (현행과 같음)

2. -----

----- 않
는다.

제4조(금고지정)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남은
기간(남은 기간-----

② -----

----- 넘을 -----.

③ -----

----- 않
는다.

제5조(금고 지정기준) ① (현행과

략)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고 배점부여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3. (생략)

④ ~ ⑦ (생략)

⑧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⑨ (생략)

제8조(금고 지정절차) ① (생략)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같음)

② -----

---- 따로-----.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9명 이상 12명 이하-----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않는다.

⑨ (현행과 같음)

제8조(금고 지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필요한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9조의2(협력사업비 운용 및 공개)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생략)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해지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② (생략)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 발급하거나-----.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협력사업비 운용 및 공개) ① -----

---- 「지방재정법」 제34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지 전에-----

----- 들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가져오는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이 정하
는 것 외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 규칙에서 --

---- 필요한-----
--- 따로-----.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일부 조문이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과의 일치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 한자어, 일본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